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BLB, IQA-RA, JEA, JEA-RB, JEA-RC, JEE, JEE-RA, KLA-RA
책임 부서: Di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유료 학비의 등록 Tuition-based Enrollment

I. 목적

진정한 거주 기준과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EA, 거주, 학비, 등록(*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과 MCPS Regulation JEA-RB, 학생 등록(*Enrollment of Students*)에 명시된 등록 자격 기준에 따라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비거주 학생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적절한 경우 수업료 면제 절차를 파악합니다.

II. 정의

- A.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Bona fide residence*)이란, 실제 또는 진실된 주 거주지가 실질적으로, Montgomery 카운티인 학생이며, 필요에 의해 또는 MCPS 학교에 무료로 등록하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학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지에서 무기한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 확인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개별적인 확인과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 B. 위기상황(*Crisis*) — 이는 매우 드물고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며, 학비 면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부모/후견인이 모두 제공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는 편리를 위해 또는 학교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MCPS에서 무료 학교 출석을 목적으로 설정된 사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C. **자격학생**(*eligible student*) — 은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로 성인 나이(18 세)가 된 학생 또는 18 세 이전에 친권으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로 현 학사연도의 개학 첫날에 20 세를 넘지 않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 D. **부정 등록**(*Fraudulent Enrollment*) —이란 실제 거주에 관한 문서를 고의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실제 거주 변경 사항을 변경 후 30 일 이내에 MCPS에 통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학비 지불 등록의 절차

- A. 학부모/후견인/적격인 학생이 MCPS Regulation JEA-RB, *Enrollment of Students* 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MCPS 의 학비 지불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 을 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IAE)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비거주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특정 학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MCPS 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과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학교를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수업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나 학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 비거주자 등록은 다음 사항에 따릅니다.
 - a) 등록은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적을 이수할 수 있는 승인입니다. 학생이 다음 학교 수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 b) 학교장은 MCPS 규정 JEE-RA, *학생 전학 및 행정 배치*(*Student Transfers and Administrative Placements*)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IAE 가 학생의 비거주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 MCPS 고등학교에 등록하려는 비거주 학생이 교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새 학교에 1년을 다녀야 합니다.

- 1) 학교 간 운동 경기 참여에의 이러한 제한은 가족이 Montgomery 카운티를 떠나 이사할 때 등록금을 내는 학생으로 등록된 거주 학생에게는 면제됩니다.
 - 2) 중학교에 수업료를 내고 등록한 비거주 학생은 같은 학년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1년간 학교 간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3) IAE 디렉터가 결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하여 등록 및 수업료 면제를 받은 비거주 학생은 1년간 학교 간 운동 경기 참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d) 학생들은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예: 언어 롤업, 메그넷, Edison)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IAE는 MCPS Form 335-73A를 검토하고 요청된 학교의 교장/지정자 및 IAE가 추천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교장/지정자와 협의하고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a)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년, 학교 및 클러스터에 충분한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 1) 학년, 학교 및 클러스터의 현재 및 예상 등록
 - 2) 건물 활용 및 학급 규모 지침 및
 - 3) 인력 배치
 - b) 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요구에 맞는 과목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 요청한 학교 또는 추천된 대체 학교는 요청에 설명된 고유한 어려움에 대응합니다.
 - d) 비거주 학생은 Montgomery 카운티 거주 학생보다 경쟁적 이거나 수요가 높은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카운티 거주 학생보다 우선적으로 접할 수는 없습니다.

- B.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IAE 는 양식 335-73 에 요청된 학교 외의 학교를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 C. Montgomery 카운티의 의탁 가정이나 그룹홈에 학생을 배치하는 타주의 사회복지 기관은 MCPS Form 335-73, 거주지 및 수업료 상태 확인 (*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를 IAE 에 제출합니다.
1. 타주의 사회복지 기관에 의하여 Montgomery 카운티에 배치된 학생은 IAE 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에는 수업료 면제를 받고 OSSSI 와 학생담당관(Pupil Personnel), OSFSE 와의 합의를 통해 거주하는 의탁가정이나 그룹홈의 거주지에 따른 학교에 배치되게 됩니다.
 2. District of Columbia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DC-CFSA)는 비거주 학생의 수업료를 청구받게 되며, MCPS 양식 335-73, 거주지 및 수업료 상태 확인(*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 및 MCPS 양식 335-73A, 비거주 수업료 납부 학생 등록 요청서(*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를 IAE 에 제출해야 합니다.
- C. 학비는 교육위원회가 매년 책정합니다.
- D. 학비 전액은 채무 상환을 포함한 학생 당 평균 예상 금액과 같으며 각 학생의 실제 교육비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반영하여 책정합니다.
- E.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의 경우, 정규 연간 학비에 채무 상환을 포함한 예상 추가 서비스 제공 비용이 학비에 추가되어 학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F. Montgomery 카운티 외에 거주하는 MCPS 직원 자녀의 학사연도와/또는 여름학기 학비 비율은 같은 학년 수준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비거주 학생 학비의 반을 지불합니다. MCPS 고용인은 학기 중에 월급에서의 삭감으로 또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G. 학비 지불
1. III.H.1. 또는 III.H.3 하의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학비 전액을 학생이 등록 또는 퇴교 날짜에 상관없이 학생이 등록한 학기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학비 비율에 관한 안내는 IAE 또는 Division of Financial Management의 Division of Controller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3. MCPS 비 고용인의 학비는 학기별 또는 연간별로 지불합니다. 첫 학기의 학비 지불 마감일은 8월 1일이며 제2학기의 학비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잔액에 대해 월 1%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금액은 수금 대행사에 회부되고 학생은 MCPS에서 퇴학 처리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a. MCPS Division of Controller는 I는 AE에 가족에게 통지를 제공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 b. IAE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은 퇴학 처리되며, 미납된 수수료는 수금 대행사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이 부정하게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은 MCPS에서 퇴학 처리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사기 등록 또는 부정 출석 기간 동안의 수업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MCPS Regulation JEA-RC, *Enrollment and Placement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Students*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H. 학비의 반환과 비례 배분

1. 비례 배분된 학비나 반환은 다음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a) 등록한 기간에의 학비를 미리 지불한 후에 학생이 카운티 거주자이거나 IV.C에 명시된 면제대상으로 판명 난 경우
 - b) 학생이 등록할 당시에는 카운티 거주자였으나 나중에 비거주자가 되어 비거주자 학비 지불 학생으로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 c) 학생이 타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 의해 MCPS에 배정되었고 학교 시작 첫날 이후에 등록, 그리고/또는 학기의 마지막 수업일 전에 퇴교한 경우
2. III.H.1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비례 계산 학비는 연 학비를 학사일로 나누어 일일당 학비를 산출하고 학생이 재학 중이던 일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a) 학비 환불은 공식 퇴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b) 학생이 등록이 취소(퇴학 조치)될 때까지 학생이 결석한 수업일에 대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학교장/대리인이 비례 계산 형태를 과목당의 등록비 적용으로 승인할 경우에는 학비가 중고등학교의 풀코스 등록비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비례 배분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1 과목 — 연 학비의 25%
 - b) 2 과목 — 연 학비의 50%
 - c) 3 과목 — 연 학비의 75%
 - d) 4 과목 — 연 학비의 100%
4. 위의 III.H.1. 또는 III.H.3에서 명시한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학생이 출석 또는 퇴교 날짜에 상관없이 학비는 반환되거나 비례 계산되지 않습니다.

I. 학비의 수집

MCPS Form 335-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 와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 가 접수되었고 지정된 학비의 청구가 결정되고 배치가 승인된 경우, 교육위원회 담당 직원은—

1. 교육위원회가 적용한 학비율에 따라 적절한 학비를 결정합니다.

2. MCPS Form 335-73A, 교육구 비 거주자의 학비/지불 학생 등록 요청서(*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의 제 3 부의 작성을 확실히 합니다.
3. 학부모/후견인/적격 학생에게 학비를 청구합니다.
4. 학비를 징수합니다.
5. IAE 기록으로 학비의 파이낸셜 어카운트를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6. 수업료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 a) 미지불 학비에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 b) 학비를 연체한 학부모/후견인/적격 학생에게 연체와 연체 이자, 미납 학비를 수금대행회사(collection agency)에 통보함을 그리고/또는 학교에서의 퇴교 가능성을 알립니다.
 - c) 학교와 IAE 거주 증명 전문가에게 알립니다.

IV. 학비 요건의 면제

- A. MCPS Regulation JEA-RB, *Enrollment of Students*에 명시된 바와 같이, 18 세 미만의 적격 학생의 부모가 Montgomery 카운티의 실질적 거주자가 아니면서 법정이 지명한 비공식 친척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후견인과 함께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에 교직원은 학비 면제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IAE에 상의해야 합니다.
- B. IAE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명시한, 학비 면제가 필요한 특정 상황에 있는 비거주 학생이 학비 요건 면제를 받을지를 학생별로 결정합니다. 이 IAE의 결정은 매해 또는 필요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C. 위기 상황에 따른 비거주자 학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사망증명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되는 부모/후견인의 사망의 경우
 2. 의료 관계자의 소견이나 메모 또는 다른 증명 서류로 부모/후견인의 심각한 질병을 입증한 경우

3. 치료 제공자가 제공한 서류 또는 다른 증명서류로 부모/후견인의 약물 중독을 입증한 경우
 4. 사법기관, 구치소가 발급한 서류나 다른 증명서류로 부모/후견인의 투옥을 입증한 경우
 5. 부모/후견인의 군복무, 군대에서의 명령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한 경우, 또는
 6. 가정에서의 특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학생의 교육적 필요나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특수하고 참작할 만한 상황으로 거주 조정의 필요를 보여주는 경우
- D.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카운티 거주자는 학비 요건 면제를 위해 다음을 신청해야 합니다 –
1. Montgomery County 실재 거주 증명
 2. 위기 상황을 명시하고 학생의 거주 책임을 전환하는 바를 명시한 학부모/후견인이 서명하고 공증받은 편지
 3. 위기 상황을 뒷받침하는 서류
 4. 함께 살 카운티 거주자의 학생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는 서명 편지와 이에 대한 공증
 5. 해당할 경우, 법정 명령에 따른 후견인 서류
- E. 자격 위기 상황에 따른 학비 면제에 대한 결정은 작성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상황에 특별히 복합적 요소가 있을 경우, 결정 시간이 연장되며 부모님/후견인에게 이를 알립니다.

V. 이의제기 절차

- A. 학부모/보호자 또는 적격 학생이 IAE 책임자가 MCPS 규칙을 적용한 것이 해당 규칙에 어긋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책임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평등 및 조직 개발부에 연락하여 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B. 개학이 된 후에 학생이 학교 출석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는 IAE가 이의제기 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돋게 됩니다.
- C.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이 이의제기 절차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할 경우, 일년 학비 중 10%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결정이 번복되거나 조정될 경우, 학비의 전체 또는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변경사: 1981년 2월 26일 이전 규정 No 560-1 ; 1987년 8월 26일, 규정 수정 및 규정을 두 규정으로 분리(본 규정과 JEA-RC); 1992년 19월 12일 수정; 2001년 7월 6일 수정; 2005년 3월 8일 수정; 2013년 7월 15일 수정; 2019년 4월 3일 전 MCPS Regulation JED-RA, 수정, 재색인, MCPS Regulation JEA-RE, *Tuition-based Enrollment*로 이름 변경, 2025년 6월 27일 개신,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디렉터리 정보에 관한 기술적 개신 포함.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과 참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합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
|---|---|
| Director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smd.org |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smd.org |
|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
|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smd.org |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smd.org |
|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 |
|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smd.org | |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로 연락합시다.